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46

발의연월일: 2021. 3. 31.

발 의 자:임호선·김병욱·김승원

김한정 • 박영순 • 박완주

오영환 · 윤준병 · 이규민

장경태 · 한병도 · 홍기원

홍성국 · 황운하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5년 24만 3,100건에서 2019년 10만 7,078건으로 점차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5년 44.4%에서 2019년 43.7%로 여전히 매우 높고, 음주운전 3회 이상위반자도 전체 위반자의 19.7%에 달하는 등 상습재범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임.

또한, 2020. 12. 17.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4.3%가 "상습 운전자에에게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해야한다"고 답변해 국민들은 음주운전 습관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장치라면 어느 정도 비용을수반하더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처벌강화나

음주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유형별 결격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게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으로 결격 기간 중에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와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 의무) ① 제4 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8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할 수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8 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1/2 이상이 도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은 해당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운전면허의 유 효기간은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 는 기간 중 발급일을 기준으로 도과하지 아니한 잔여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시·도경찰청장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안전 운행과 음주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개조하거나 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음주운 전 방지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 2.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대한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①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조건부 운전면허의 발급절차,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10년
 - 가.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다.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제82조제2항제3호가목 중 "제44조, 제45조"를 "제4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 다.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라.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5의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 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위반한 경우
 -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를 일으킨 경우
- 제82조제2항제7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 제3호의2," 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 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 한 경우
- 제1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 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개조하거나 손 상, 그 밖의 방법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적용례) 제 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 결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4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 의무)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
	람은 제82조제2항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
	안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
	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
	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할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
	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82
	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1/2 이상이 도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
	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를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운전 면허의 유효기간 동안 음주운 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만을 운전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해당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은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 중 발급일을 기준으로 도 과하지 아니한 잔여기간의 1.5 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안전운행과 음주운전 등에 관 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 여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 지장치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개조하거나 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 2.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 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에 대한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 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 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80조에 따 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음주 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발급절차,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절 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생 략)

1. (0 -1)

<신 설>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
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
한다)부터 10년
한다)부터 10년 <u>가.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u>
<u>가.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u>
<u>가.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u> <u>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u>
<u>가.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u> 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 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

- 2. (생 략)
-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 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 가. <u>제44조, 제45조</u> 또는 제4 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 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 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 우

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

<u> </u>
Ŷ
스 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
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
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
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다.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
<u> </u>
2. (현행과 같음)
3
가. <u>제45조</u>

<u><</u> 삭 제>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

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 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 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신 설>

<신 설>

- 4. (생략)
- 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 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

- 다.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라.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4. (현행과 같음)

5.	<u> 자동차등을</u>

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신 설>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5의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
을 말한다)부터 3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2회 위반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
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
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
<u> </u>
6
<삭 제>

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 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 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 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 으킨 경우

다. • 라. (생 략)

<신 설>

<u>7. · 8.</u> (생 략)

③ (생략)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 · 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 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

<삭 제>

다. • 라. (현행과 같음)

- 7.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1 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 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 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8. • 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100=(1 1 1 1 1 1	11—	0 17
①		

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 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 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 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 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 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 다.

1. ~ 3. (생 략) <신 설>

4. ~ 20. (생략)

<u>제3호, 제3호의2</u>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
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
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4. ~ 2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제148조(벌칙) (생 략)

<신 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신 설>

2 ~	④ (현행과 같음)	
게 1 40 고	(버킹) ① (청쳉 케모	

제148조(벌칙) <u>①</u>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②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 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 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 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 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		_	,	/													
제1	\mathcal{I}	公公	こし	7	<u>-</u> i -	\hookrightarrow)	_		_	_	 			_	_			_	
711 1	1_ 6) -	- 1	H	а	7 I	١.													

-----.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4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개조하 거나 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